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 례 안

(9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 례 명	쪽수
2024-57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1
2024-58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5
2024-5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9
2024-60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환경과)	13
2024-61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과)	21
2024-62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과)	25
2024-63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농업기술과)	29
2024-6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33
2024-65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체육시설사업소)	39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5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협의회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중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7.~3. 2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 활동
2.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활동

제4조(이중지원 제한)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협의회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창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나. 추진 예정 보조사업

1) 연 1회

2) 사업예시

가) 독거노인대상 김장김치 나눔사업 재료비 3,000천원

나) 위기청소년 대상 무료급식 지원 재료비 3,000천원 등

작성자 행정과장 윤광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5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할인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 확대함(안 제3조)

1) 신설: 5만원, 10만원

나.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함(안 제6조·제7조)

다. 할인범위 확대, 추가할인 근거 마련함(안 제9조)

1) 할인범위: 100분의 6 ⇒ 100분의 10

2) 추가할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5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4. 30.~5.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종이형의 권면금액”을 “권면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50,000원권
- 6. 100,000원권

제6조제3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u>종이형의 권면금액</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원권 2. 2,000원권 3. 5,000원권 4. 10,000원권 <u><신 설></u> <u><신 설></u> ③ (생략)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② (생략) ③ <u>법 제7조제4항</u>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u>같은 조 제2항</u>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u>권면금액</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원권 2. 2,000원권 3. 5,000원권 4. 10,000원권 5. 50,000원권 6. 100,000원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7조제5항</u>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u>같은 조 제3항</u>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현행	개정안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u>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u> 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u>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5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 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등 정비함(안 제2조·제7조의3·제10조)

1) 국가보훈대상자 정의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설

2) 명예수당 관련 용어 등 정비

가)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나)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이름 변경: 참전명예수당 ⇒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3)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4) 인용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나. 생업지원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4. 24.~5.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7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생업지원) 군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나.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전몰군경의 유족

다.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라. 보훈명예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처장</u>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6. (생략) 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③ <u>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용 신청 및</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u>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u>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u>국가보훈부장관</u>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5.~6. (현행과 같음) 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중단·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u> <u><신 설></u>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명예수당</u> 가. <u>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u> 나. <u>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u> 다. <u>보훈명예수당: 가목·나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명예수당</u> 가. <u>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u> 나. <u>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5만원</u> 다. <u>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u> 2. (생략)	제9조(생업지원) 군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명예수당</u> 가. <u>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u> 나. <u>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전몰군경의 유족</u> 다. <u>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u> 라. <u>보훈명예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다.</u> 1) <u>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u> 2) <u>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u>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명예수당</u> 가. <u>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월 15만원</u> 나. <u>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5만원</u> 다. <u>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u> 2. (현행과 같음)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24-6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정함(안 제4조)
-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함(안 제5조~제13조)
-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정함(안 제14조)
-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정함(안 제15조)
- 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를 정함(안 제16조·제17조)
- 사. 교육·훈련 등,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4. 29.~5.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거창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거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창소방서, 거창경찰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가. 거창경찰서·거창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의 장
 -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다.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라.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마.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바.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解囑)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이하 “주민소산계획”이라 한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화학사고 발생 여부, 화학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화학사고 발생 시간, 화학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화학사고 시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 2)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의 수당
-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용 지원

나. 관련조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의견 청취(안 제11조), 재정 지원(안 제1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31	11	11	11	11	7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20백만원(2025년, 5년마다)
2.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의 수당: 연간 1백만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용 지원: 연간 10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6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거창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을 정함(안 제2조)

1)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사업: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환승 할인, 공영버스 결손 보전 등을 위한 지원

다. 차등 지원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5. 9.~5.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인접한 시·도 및 시·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7.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차등 지원)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비용

나. 관련 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군비	30	31	32	33	34	16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
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가. 보조금(손실 보상금): 30백만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6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어르신, 버스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라. 버스 이용요금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마. 지원 요건을 정함(안 제5조)
- 바.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을 정함(안 제6조)
- 사. 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를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45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5. 9.~5. 2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স্য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② 군수는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4조(버스 이용요금 지원) 군수는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요건)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2.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됨

제6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류를 갖추어서 버스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용을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7조(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 군수는 어르신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교통카드 발행, 버스 이용요금 지원

나. 관련 조문

- 1) 버스 이용요금 지원(안 제4조)
- 2) 지원 요건(안 제 5조)
- 3) 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안 제 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450	459	468	477	486	2,34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농어촌버스 이용지원을 통해 거창군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 가. 보조금(손실 보상금): 300백만원
나. 시설비(카드 시스템 구축): 110백만원
다. 일반운영비(카드 제작): 40백만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6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2008년 이후 신설·확대·폐지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을 현행화하여 변화하는 농업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기능, 위치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센터의 시설을 현행화함(안 제4조)
- 다. 교육훈련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4년 예산 179,100천원 확보(교육훈련비)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4. 15.~5.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업개발센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사·분석
2. 작물기술, 친환경농업, 화훼산업 등의 시험연구
3. 농업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지도
4. 농산물 가공 연구
5. 그 밖에 농업기계화 등 지역농업 개발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치 등) ① 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외에 둔다. 이 경우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총칭하여 센터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실증 시험포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3.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4. 종합분석실
5. 가축질병진단실
6. 유용미생물배양센터
7.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8. 농산물가공지원센터
9. 미래농업복합교육관
10. 사과테마파크
11. 천적생태과학관
12. 약초유통센터
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개발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제5조(교육훈련) ① 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한다.

② 교육의 과정·기간 및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교육,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비

나. 관련 조문: 교육훈련(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179,100	179,100	179,100	179,100	179,100	895,500

※ 강사료,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변동이 없는 가정 하에 추계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4년 예산

가. 교육사업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녹색대학 현장교육, 여성
농업인 교육 등

나. 세부 내역

- 1) 총사업비: 179,100천원
- 2) 교재제작: 2,800천원
- 3) 홍보자료 제작 등: 29,500천원
- 4) 교육 강사료: 30,000천원
- 5) 보상금: 1,500천원
- 6) 차량임차료: 10,400원
- 7) 교육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00천원
- 8) 그 밖의 경비: 79,900천원

작성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6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내에 생활체육 시설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함에 따라 그 위치 및 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2조의2, 별표 1)

나. 사용료를 정비함(안 별표 1의2)

1) 신설: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2) 삭제: 파크골프장

다. 약칭 표현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 「지방자치법」 제156조

나. 예산조치

1) 2019년~2023년 예산 13,100백만원

2) 2024년 예산 5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5. 10.~5.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체육시설의 명칭 등)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중전 별표 1) 중 시설명란 중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을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거창군 체육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으로 하고, 파크골프장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① 체육 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②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③·④ (생 략)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u>별표 1과</u> 같다. ② (생 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체육시설의 명칭 등)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① 체육 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② <u>군수</u>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u>별표 1의2와</u> 같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신 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가. 스포츠파크 나. 국민체육센터 다.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라. 거창군 체육관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일원
마.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고제면 고제로 46
바. 그 밖의 체육시설	군수가 따로 정함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
나. 관련 조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별표 1)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설치비용: 2019년~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6차연도 (2024년)	계
계	1	1,042	1,464	3,787	4,028	2,324	13,100
국비 (29%)			295	1,148	1,516	831	3,790
도비 (0.8%)					2	98	100
군비 (70.2%)	1	1,042	1,169	2,639	2,510	1,395	9,210

나. 운영·관리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50	51	52	53	54	26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비용추계 요약: 2024년도 예산

- 가. 인건비: 10백만원
나. 운영경비(보험료,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20백만원
다. 일반관리비: 20백만원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 순 행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4-6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파크골프장의 확대 설치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크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파크골프장 설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별표 1)
- 나. 이용허가 등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료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별표 2)
- 라. 안전교육을 정함(안 제5조)
- 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법」 161조
- 나. 예산조치
 - 1) 20022년~2023년 예산 2,300백만원
 - 2) 2024년 예산 204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5. 10.~5. 28.
 -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불임)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파크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크골프장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한다.

1.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2.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허가 등)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등) ① 36홀 규모 이상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연회원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5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육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파크골프장의 운영·위탁
2. 전문관리인 배치 등의 파크골프장 관리
3. 개방 및 개방 제한
4. 입장의 거절·퇴장
5. 시설 이용 시간 및 휴무일
6.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
7. 이용자 준수사항
8.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
9.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10. 그 밖에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군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홀수	비고
거창읍 파크골프장 1구장	거창읍 양평리 1141번지 일원	18홀	조명
거창읍 파크골프장 2구장	거창읍 양평리 1126번지 일원	18홀	조명
거창읍 파크골프장 3구장	거창읍 대평리 12번지 일원	9홀	
주상면 파크골프장	주상면 도평리 1225번지 일원	9홀	
웅양면 파크골프장	웅양면 산포리 산261-43번지 일원	9홀	
고제면 파크골프장	고제면 봉계리 525-2번지 일원	9홀	
위천면(수송대) 파크골프장	위천면 상천리 527-6번지 일원	9홀	조명
제2창포원 내 파크골프장	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일원	36홀	
신원면 파크골프장	신원면 과정리 944번지 일원	9홀	
가조면 파크골프장	가조면 일부리 1060-3번지 일원	9홀	조명
가북면 파크골프장	가북면 몽석리 1177-1번지 일원	9홀	

[별표 2]

거창군 파크골프장 이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구분		거창군민	거창군민이 아닌 자	이용시간
일일 이용자(개인)		2,000	5,000	1일 4시간 이내
연 회원(개인)		120,000	해당 없음	
연 회원(단체)		60,000		
비고	1. “거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협회를 말한다. 3.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사서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관리 비용
나. 관련 조문: 파크골프장 설치 등(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36홀 파크골프장 설치비용: 2022년·2023년 예산 2,300백만원
나) 관리·운영 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204	208	212	216	220	1,060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3. 비용추계 요약: 2024년도 예산

- 가. 운영경비(보험료,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4백만원
나. 일반관리비: 200백만원(예초작업 및 잔디 보식 등)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임 순 행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이선우	-이용료의 감면(안 제6조제9호) -면제대상에 거창군 체육회 의 체육행사 ⇒ 거창군 체 육회 및 거창군 파크골프협 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구체적 명문화	- 거창군 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 규정”에 파크골프협회가 포함되어 있어 구분 불필요	- 미반영
이선우	-전문관리인 배치(안 제6조제2호) -36홀 이상 파크골프장에는 파크골프 2급 이상 생활스포츠 지도사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배치	-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여야 함 - 파크골프장 관련은 법령 개정 시 법령에 따라 적용하면 됨	- 미반영
이선우	- 이용료(안 별표 2) -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 회원 등록된 거창군 종목별 협회 ⇒ 거창군 파크 골프협회 산하 클럽으로 수정	-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를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 설이므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임. 따라서 파 크골프협회로만 제한한다는 것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목적 에 맞지 않음	- 미반영
정종찬	- 이용료(안 제4조) - 이용료 징수대상 파크골프 장 규모: 36홀 이상 ⇒ 18 홀 이상으로 확대	- 우선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을 유료화 운영하고 일정 기간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점진 적 확대 시행 검토	- 미반영
정종찬	-위탁(안 제6조제1호) -비영리 법인 및 체육단체에 우선 지정 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시 법 제9조에서 특정 단체나 우 선 위탁 대상을 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위탁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모을 통해 위탁자 선정	- 미반영